# 예 천 군 거 점 지 역 군 관 리 계 획
## (호명지구 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 구역) 결정(변경)에 따른
#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

2017. 12

예 천 군

# 제 1 장 계획의 개요

## 1.1 계획의 배경 및 목적

□ 2020년 예천군관리계획(재정비)의 거점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용도지역 변경 및 상향이 이루어져 거점기능 부여로 인한 개발압력이 가중되어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.

□ 거점지역에 대하여 입체적, 계획적, 체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서 향후 토지이용의 합리성 제고,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과 양호한 도시·주거환경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.

□ 현실적인 도시개발 유도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

□ 주택시장 환경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개발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효율적인 개발사업 수립

## 1.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□ “전략환경영향평가”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·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.

□ “전략환경영향평가”는 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9조 제1항에 따라 대상계획이 결정되며 제2항에 관련하여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된다. 또한 시행령 제7조 제2항 관련 [별표 2]에 따른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는 다음 표와 같다.

<표 1.2- 1>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| 구 분 | |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| 협의 요청시기 |
|---|---|---|---|
| 개발기본계획 | 가. 도시의 개발 | 3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·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|

## 1.3 계획의 개요

가. 계 획 명 : 예천군 거점지역 군관리계획(호명지구 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 구역) 결정(변경)

나. 위 치 :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, 오천리, 산합리 일원

다. 면 적 : 256,800㎡

라. 수립기관 : 예천군

마. 승인기관 : 예천군

바. 협의기관 : 대구지방환경청

사. 사업기간 : ~ 2020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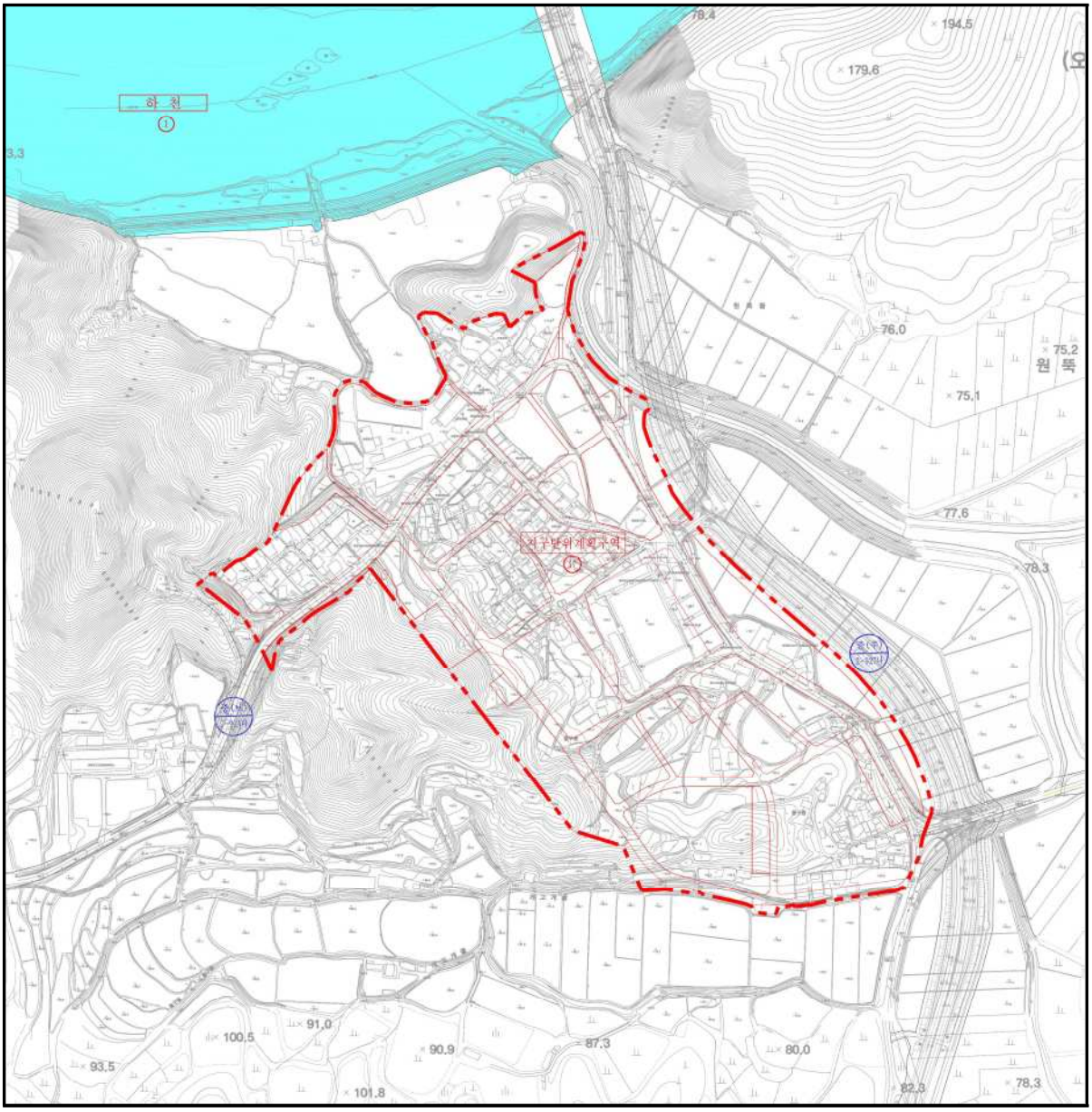


(그림 1.3- 1) 계획지구 구역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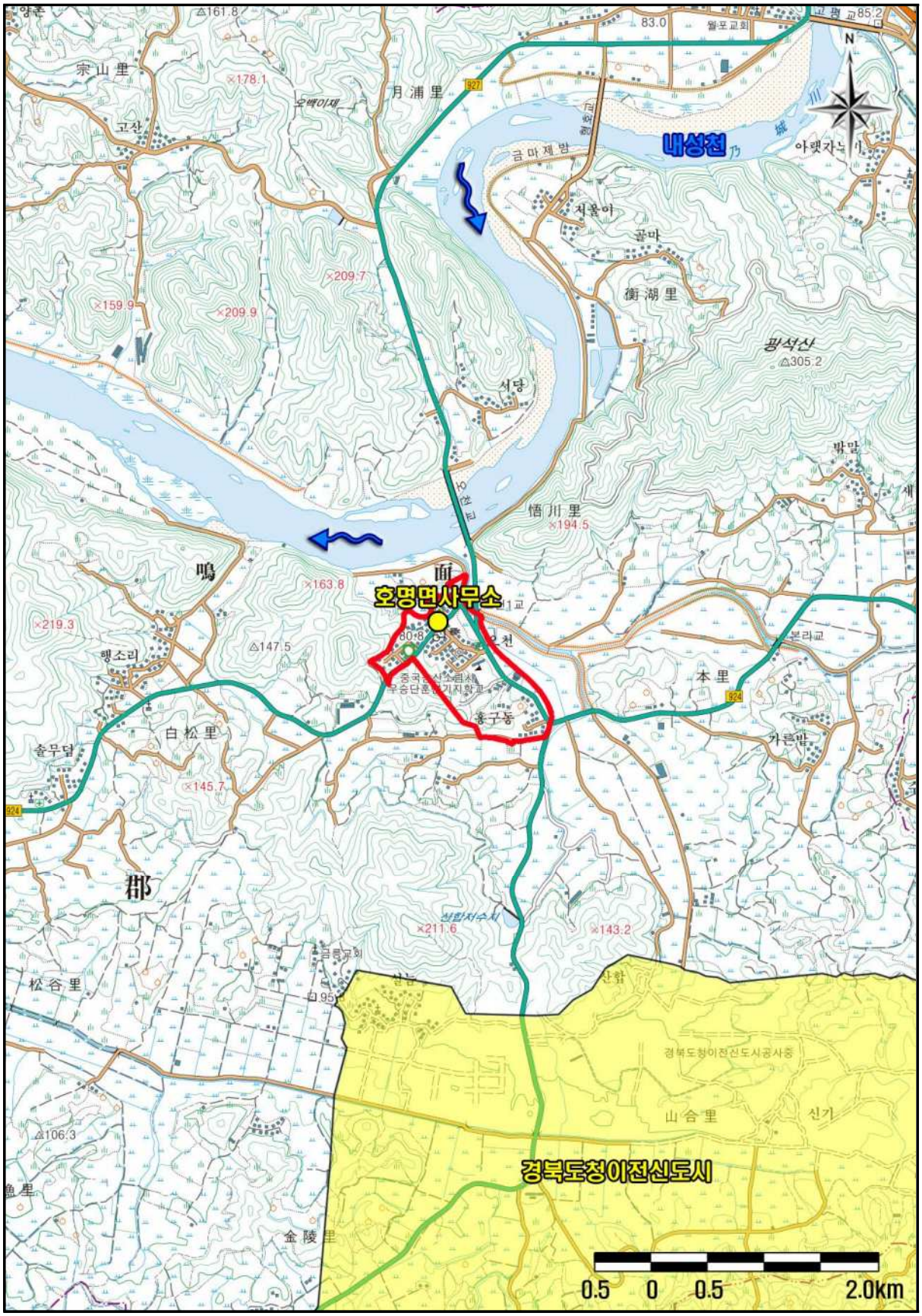


(그림 1.3- 2) 계획지구 위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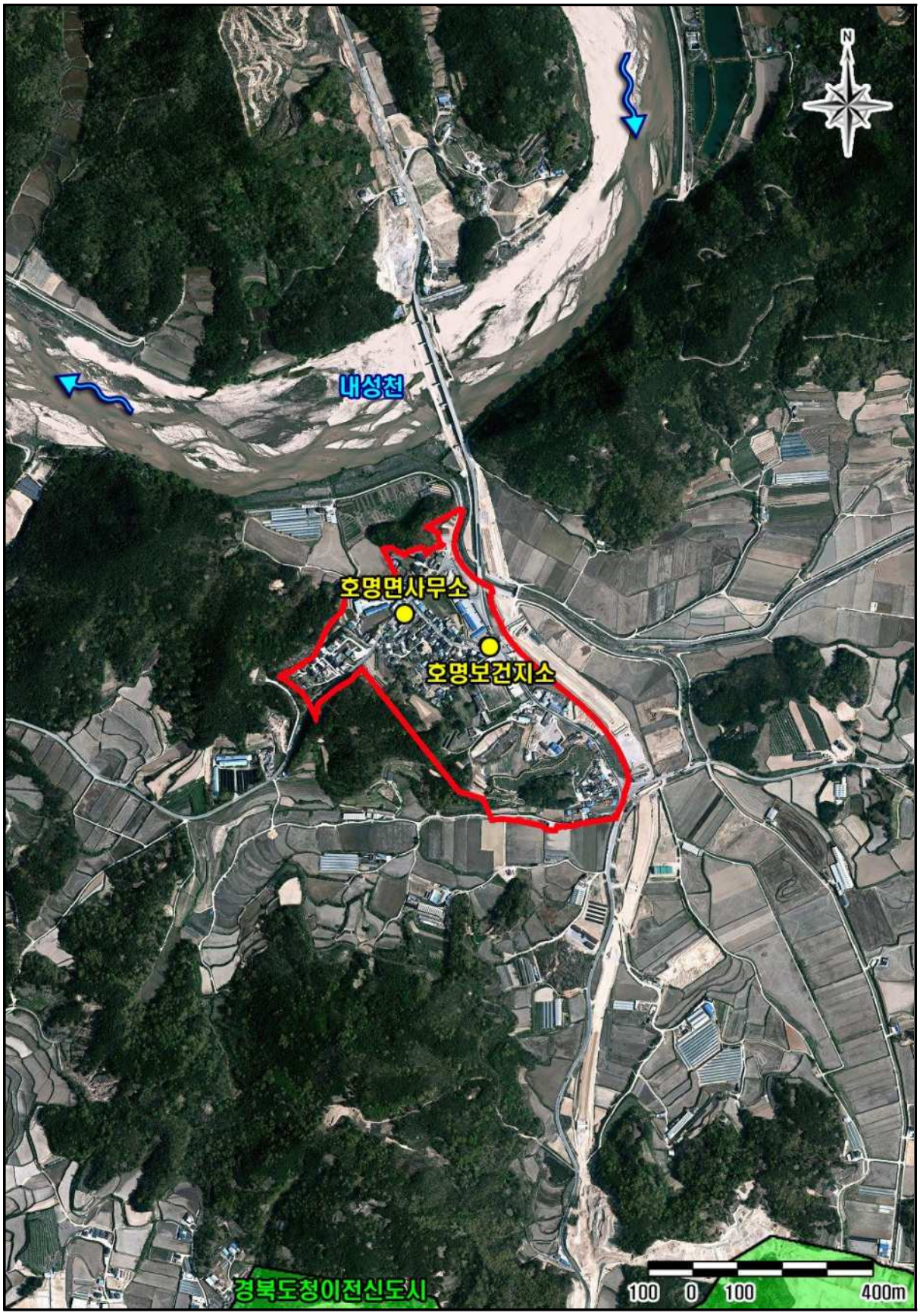


(그림 1.3- 3) 계획지구 위성사진

## 아. 계획의 내용

### 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□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<표 1.3- 1>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| 도면표시번호 | 지 구 명 | 위 치 | 면 적(㎡) | |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기 정 | 변 경 | 변 경 후 | |
| 17 | 호명지구 | 예천군 호명면 일원 | - | 증) 256,800 | 256,800 | - |

□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<표 1.3- 2>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

| 도면표시번호 | 지 구 명 | 변 경 내 용 | 변 경 사 유 |
|---|---|---|---|
| 17 | 호명지구 | ··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<br>- 면적 : 256,800㎡ | · 비도시지역 호명면 일원에 대하여 토지이용 합리화 및 기능증진과 경관을 향상시키고,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 |

### 2)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용도지구) 결정(변경) 조서

□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<표 1.3- 3>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| 구 분 | | 면 적(㎡) | | | 구성비(%)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기 정 | 변 경 | 변경후 | | |
| 합 계 | | 256,800 | - | 256,800 | 100.0 | - |
| 관리지역 | 소 계 | 239,771 | 증) 17,029 | 256,800 | 100.0 | - |
| | 보전관리지역 | 7,733 | 감) 7,733 | - | - | - |
| | 생산관리지역 | 16,391 | 감) 16,391 | - | - | - |
| | 계획관리지역 | 215,647 | 증) 41,153 | 256,800 | 100.0 | - |
| 농림지역 | | 17,029 | 감) 17,029 | - | - | - |

※ 기정은 경상북도 고시 제2017-101호(2017.04.13)에 의한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사항임.

□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<표 1.3- 4>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| 도면 표시 번호 | 위치 | 용도지역 | | 면적 (㎡) | 용적률 (%) | 결정(변경)사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기정 | 변경 | | | |
| 1 | 호명면 오천리 | 생산관리 지역 | 계획관리 지역 | 11,890 | 호명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따름 | · 신도시연결도로 개통 등 도청이전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호명면소재지 일원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하여 기존 취락지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여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관리코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일관된 관리체계 도모 |
| 2 | 호명면 오천리 | 생산관리 지역 | | 4,501 | 호명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따름 | |
| 3 | 호명면 오천리 | 보전관리 지역 | | 569 | 호명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따름 | |
| 4 | 호명면 오천리 | 보전관리 지역 | | 7,164 | 호명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따름 | |
| 5 | 호명면 오천리 | 농림지역 | | 17,029 | 호명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따름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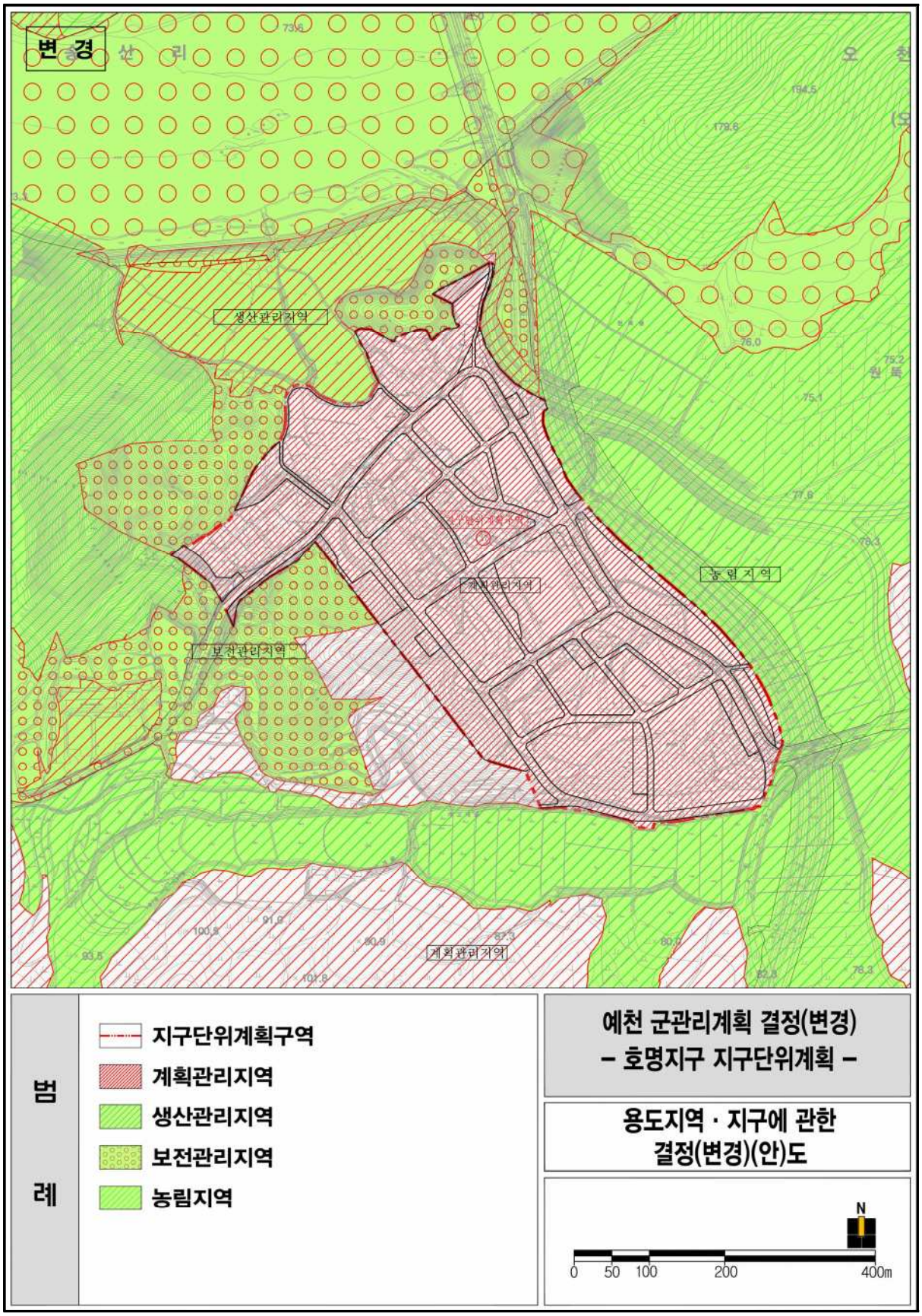


(그림 1.3- 4) 용도지역·지구 결정(변경)도

## 자. 기본구상

### 1) 기본방향

□ 상위·관련계획을 고려한 실현성 있는 경제적·합리적 개발계획 수립

□ 대상지구의 계획목표 달성을 위한 공간구조 형성 및 기능배분을 통한 합리적인 토지이용체계를 구축

□ 대상지내 자연현황 여건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공간계획으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

□ 대상지구의 계획목표를 달성하고 지역개발 실정에 부합하기 위한 공간구상 도모

### 2) 기본구상

#### 가) 토지이용체계

□ 기존 취락지역을 중심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용지 구상

□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상업용지, 주민이용 편익을 위한 교육·문화시설 및 공원, 광장 등 공공시설용지 계획

#### 나) 교통체계

□ 기존 현황도로 및 예천 군관리계획(재정비)에 의하여 기 결정된 도로를 최대 활용하고, 주변 연결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가로망 계획 수립

□ 기존 지적형태 및 맹지해소(맹지 ZERO)를 위한 국지도로 계획

#### 다) 공원·녹지체계

□ 공원 및 녹지는 대상지내 기존 구릉지 및 하천변 등 지형적 요소와, 신도시연결도로변 녹지 설치 등을 고려하여 계획

# 제 2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

## 2.1 평가 대상지역 설정

□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공사 시 및 운영 시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·분석하기 위하여 계획의 특성 및 주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였다.

<표 2.1- 1>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

| 구 분 | 평가항목 | | 설정기준 | 평가대상지역 |
|---|---|---|---|---|
| 자연 환경의 보전 | 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 | 동·식물상 | ◦계획시행으로 인한 동·식물의 서식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| ◦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300m 이내 |
| | 지형 및 생태축 보전 | 지형·지질 | ◦공사 시 절·성토에 따른 지형 및 지질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| ◦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|
| |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| 경관 | ◦시설물 입지로 인한 경관의 변화 | ◦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|
| | 수환경의 보전 | 수질 | ◦공사 시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에 따른 인근 수계 영향<br>◦운영 시 용수공급 및 오수처리방안<br>◦유역의 유출계수 변화 | ◦계획지구 및 주변하천 |
| 생활 환경의 안전성 | 환경 기준 부합성 | 대기질 | ◦공사 시 장비가동에 의한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| ◦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1,000m 이내 |
| | | 소음·진동 | ◦공사 시 장비가동에 따른 소음·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 | ◦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300m 이내 |
| | 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| 친환경적 자원순환 | ◦공사 시 및 운영 시 폐기물발생량 예측 및 처리계획 | ◦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|
| 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|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| | ◦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| ◦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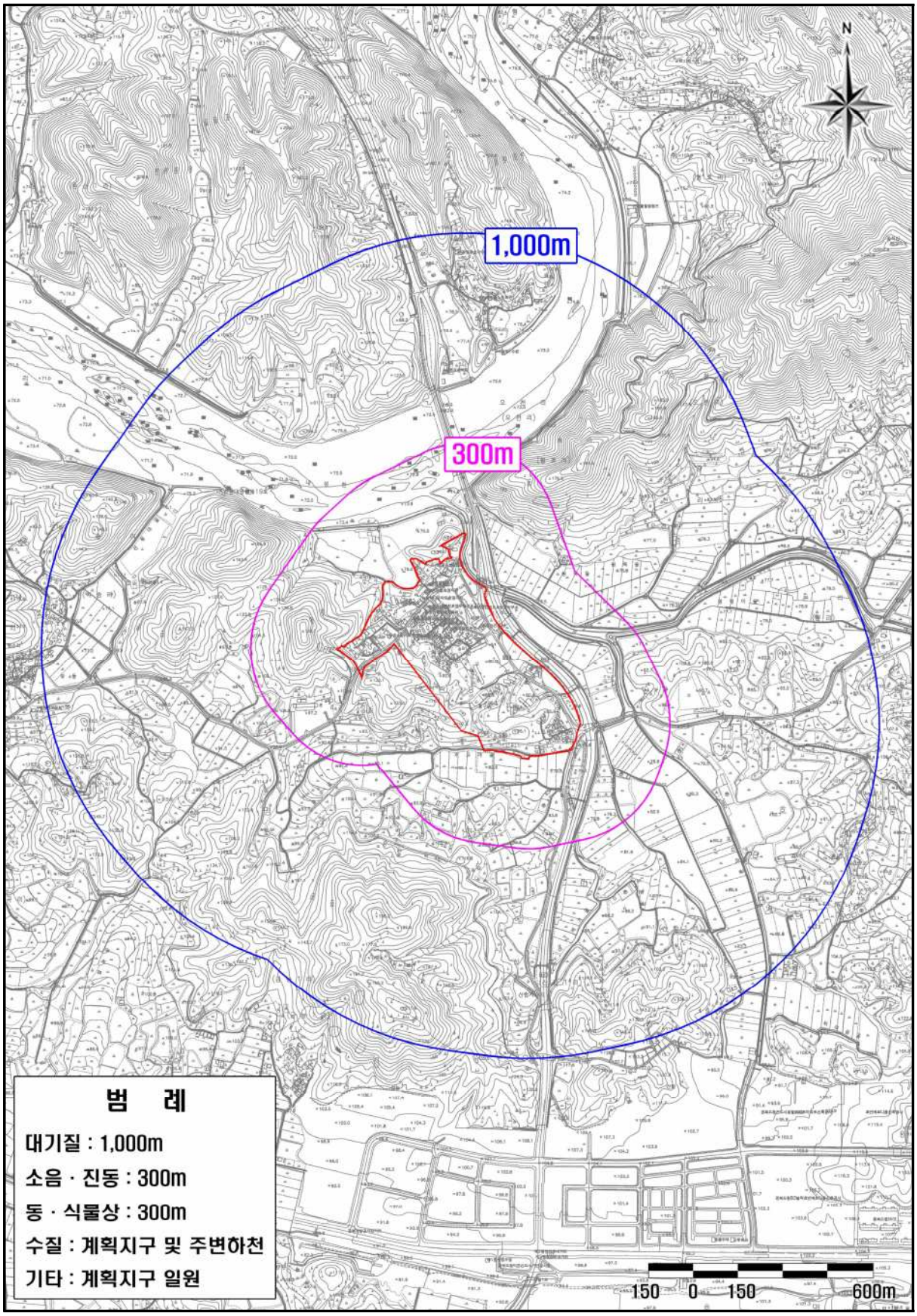


(그림 2.1- 1) 대상지역 설정도

# 제 3 장 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

## 3.1 평가항목 설정

### 가. 환경영향요소의 추출

□ 본 계획시행 시 자연환경의 보전, 생활환경의 안전성, 사회·경제환경과의 조화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출하였다.

-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특성을 인지
-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에 따른 지역특성 파악
- 공사 시 및 운영 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 분석 및 추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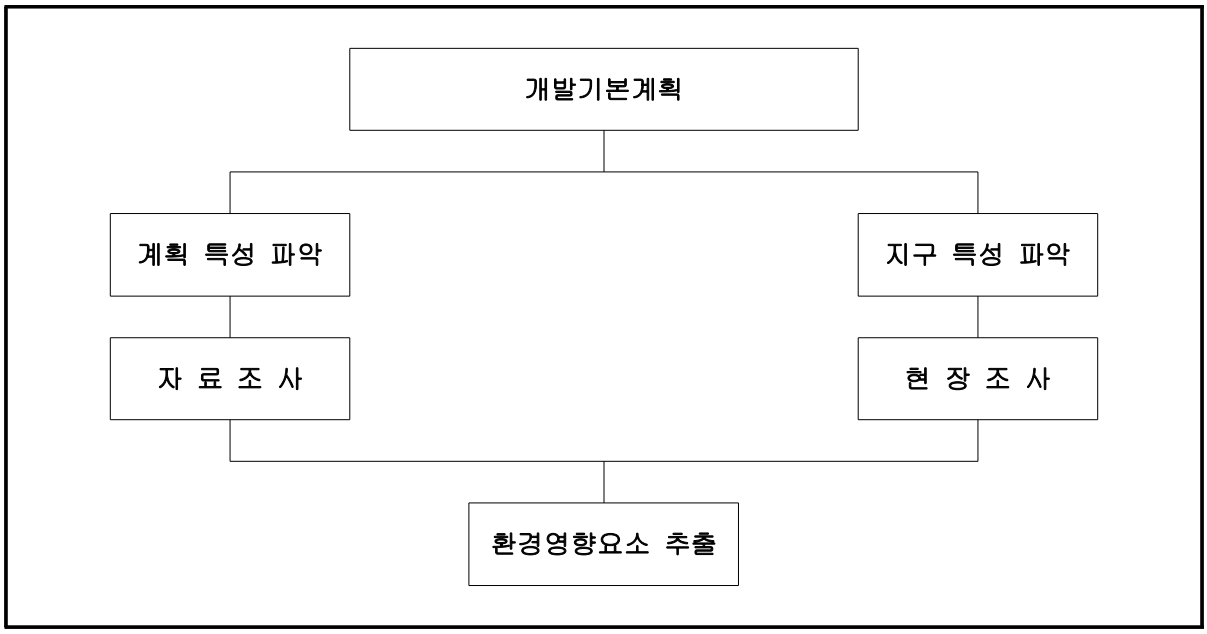


(그림 3.1- 1) 환경영향요소추출 모식도

<표 3.1- 1> 환경영향요소

| 구 분 | 환 경 영 향 요 소 |
|---|---|
| 공사단계 | ◦ 부지정지(절·성토 사면발생) ◦ 공사인부투입<br>◦ 공사장비 가동 ◦ 토사유출 |
| 운영단계 | ◦ 토지이용 변화 ◦ 시설물 설치에 따른 경관변화<br>◦ 건축물 조성 ◦ 생활오수 및 폐기물 발생 |

## 나. 평가항목의 설정

□ 본 계획시행에 따른 평가항목은 계획의 특성,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.

<표 3.1- 2> 분야별 평가항목의 선정

| 구 분 | 평가항목 | | 선정 여부 | 선정(제외) 사유 |
|---|---|---|---|---|
| 자연 환경의 보전 | 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 | 동·식물상 | 선정 | ◦계획시행에 따른 서식지 훼손 및 단절<br>◦동·식물의 이동로 및 서식지간 차단으로 동·식물상의 서식형태 변화<br>◦야생생물보호구역 등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영향여부<br>◦식생 및 녹지자연도 변화 |
| | 지형 및 생태축 보전 | 지형·지질 | 선정 | ◦절·성토에 따른 지형의 변화<br>◦토량이동 및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 |
| |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| 경관 | 선정 | ◦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경관요소 파악<br>◦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|
| | 수환경의 보전 | 수질 | 선정 | ◦공사 시 토사유출에 따른 하천수질 변화<br>◦공사 시 투입인력에 의한 오수발생<br>◦계획시행에 따른 인근수계에 미치는 영향<br>◦운영 시 급수 및 오수 발생 |
| 생활 환경의 안전성 | 환경기준 부합성 | 대기질 | 선정 | ◦공사 시 장비가동에 따른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발생 |
| | | 소음·진동 | 선정 | ◦공사 시 장비가동에 따른 소음·진동발생 |
| |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| | 미선정 | ◦하수종말처리장, 폐기물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이 입지하지 않음 |
| | 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| 친환경적 자원순환 | 선정 | ◦공사 시 및 운영 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, 공사 시 장비가동에 따른 폐유발생 |
| 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|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| | 선정 | ◦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<br>◦편입토지 발생 |

## 3.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

### 가. 조사 · 예측의 방법

□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한 평가항목별 조사, 예측방법은 다음과 같다.

- 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계획이다.
- 예측은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예측된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.

<표 3.2- 1>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 · 예측 방법

| 평가항목 | 현황조사 | 영향예측 방법 |
|---|---|---|
| 생물다양성 ·서식지 보전 (동·식물상) | ① 조사내용 : 식물상 및 식생, 육상 동물상, 육수 동물상 등<br>② 조사범위 :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약 300m<br>③ 조사방법 : 현지조사 및 자료조사 | -계획시행으로 인해 주변 동·식물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|
| 지형 및 생태축 보전 (지형·지질) | ① 조사내용 : 계획지구의 지형, 지질, 토질성상, 사면안정성 등<br>② 조사범위 :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<br>③ 조사방법 : 현지조사 및 자료조사 | -절·성토에 따른 지형의 변화예측<br>-토량이동 및 토사유출의 영향예측 |
|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(경관) | ① 조사내용 : 경관 현황<br>② 조사범위 :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<br>③ 조사방법 : 현지조사 및 자료조사 | -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경관요소 파악<br>-사진합성을 이용한 경관변화 예측 |
| 수환경의 보전 (수질) | ① 조사내용 : 계획지구 주변지역의 지표수 수질현황<br>② 조사범위 :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수계<br>③ 조사방법 : 현지조사 및 자료조사<br>④ 조사지점 : 지표수 4개지점 | -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예측<br>-공사 시 투입인원에 의한 오수 발생량 예측<br>-운영 시 오수발생에 의한 영향예측 |

<표 계속>

| 평가항목 | 현황조사 | 영향예측 방법 |
|---|---|---|
| 환경기준 부합성 (대기질) | ① 조사내용 :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<br>② 조사범위 :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약 1,000m<br>③ 조사방법 : 현지조사 및 자료조사<br>④ 조사지점 : 4개지점 | -공사 시 대기확산모델을 이용하여 토공량 및 장비운영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|
| 환경기준 부합성 (소음·진동) | ① 조사내용 :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소음·진동 현황 및 소음발생원<br>② 조사범위 :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약 300m<br>③ 조사방법 : 현지조사 및 자료조사<br>④ 조사지점 : 4개지점 | -공사 시 및 운영 시 소음·진동 영향예측 |
| 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(친환경적 자원순환) | ① 조사내용 :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<br>② 조사범위 :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<br>③ 조사방법 : 자료조사 | -공사 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처리대책 수립 |
| 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(환경친화적 토지이용) | ① 조사내용 : 용도별,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<br>② 조사범위 :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<br>③ 조사방법 : 현지조사 및 자료조사 | -계획시행 전·후의 토지이용상의 변화 검토 |

## 나. 평가방법

□ 평가항목마다 본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리하고, 환경영향을 회피 또는 저감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비교·검토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도출한다.

# 제 4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

## 4.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

□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의견을 반영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『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』에 따라 예천군청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간 공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,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할 계획이다.

## 4.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

□ 『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』 및 『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』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으로 별도의 주민설명회 등은 필요시 개최토록 할 계획이다.

□ 평가서 초안 공고

- 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
- 본 계획의 관할 구인 예천군청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한 공고

□ 평가서 초안 공람

-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평가서초안에 대한 요약서(10쪽 내외)를 별도로 작성하여 예천군청 홈페이지에 게시
- 계획지구가 위치한 예천군청 및 예천읍사무소 등에 평가서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공람장소는 예천군청과 추후 협의하여 결정함

□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

- 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는 관련법에 따라 실시할 계획인 바,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 시에는 예천군청과 추후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임
-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로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

# 제 5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결과

## 5.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

### 가. 법적근거

□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8조(환경영향평가협의회)

□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4조(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)

□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5조(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)

□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1조(평가 항목·범위 등의 결정)

### 나. 심의

□ 협의회 방법 : 서면심의

□ 심의기간 : 2017년 11월 13일 ~ 11월 24일

□ 심의내용 :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

(대상지역 설정, 토지이용구상안, 대안,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)

□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원

| 연번 | 직 위 | 소 속 단 체 | 성 명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위원장 | 예천군 | 이 재 윤 | 부군수 |
| 2 | 위원 | 예천군 | 황 이 상 | 건축도시과장 |
| 3 | 위원 | 예천군 | 권 영 덕 | 환경관리과장 |
| 4 | 위원 | 대구지방환경청 | 류 영 한 | 환경평가과장 |
| 5 | 위원 | 영남대학교 | 서 정 인 | 교수 |
| 6 | 위원 | 경북도립대학교 | 황 의 현 | 교수 |
| 7 | 위원 | 녹색희망연합 | 권 종 항 | 회장 |
| 8 | 위원 | 남본2리 이장 | 김 영 규 | 주민대표 |
| 9 | 위원 | 청복1리 이장 | 전 순 섭 | 주민대표 |
| 10 | 위원 | 오천리 이장 | 김 종 복 | 주민대표 |

## 5.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

###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
[예천군 거점지역 군관리계획(호명지구) 결정(변경)]

**사 업 개 요**

- ○ 위 치 :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, 오천리, 신함리 일원
- ○ 규 모 : 256,800㎡
- ○ 근 거 :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- ○ 사업시행자(승인기관) : 예천군(예천군)
- ○ 사업계획 :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

□ 총괄의견

○ 동 계획은 예천군 호명면 일원에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시 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

○ 인구·산업·교통 및 토지이용 등 주변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

○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여부, 다수의 대안 검토를 통한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여건과 토지이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계획추진 시 예상되는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·범위·방법 등을 설정하여야 함

○ 공사 및 운영 시 협의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(민원해소 방안 포함)을 강구·시행하여야 함

○ 환경영향평가서는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21조 또는 제65조, 「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 제2016-131호, '16.7)」 및 「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(환경부, '13.1)」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함

- 1 -

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

**1. 대상지역의 설정**

○ 해당지역 및 주변의 지형, 수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, 그 범위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

- 입지(보호지역 위치, 주변 지역의 개발 등에 따른 누적적 영향 등)의 특성 및 계획의 성격(적용 공법) 등을 고려하여 직·간접적인 영향 권역을 검토한 후 평가 대상지역 설정
- 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사업지구 및 그 변지역에 개발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

○ 대상지역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·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선정하고, 도면에 표기 하여야 함

- 예측분석 기법, 내용, 관련자료 등을 명기하고, 타당성 제시

**2. 토지이용 구상안**

○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환경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적정 규격의 도면 등에 표기하여야 함

○ 대상 블록이나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, 식생 등 객관적인 현황자료가 아닌, 주변지역과의 형평성, 특정 개발사업 등의 사유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

○ 대규모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결정(변경) 등은 미리 구역지정 및 용도 변경을 하기보다는 향후 별도의 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을 이행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

- 2 -

**3. 대안**

○ 평가서 작성시 환경적 측면에서의 사업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3가지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비교를 통한 장·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,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함

- 예천군의 인구증가율이 정체 상태(평가준비서 25p)이나 최근 5년(2011~2015)의 주택 공급은 증가(주택보급률 111.4% → 119.8%)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요·공급을 면밀히 예측하여 적정 계획 수립 할 것

**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**

○ 평가항목 :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「별표 1」 세부평가항목

- 평가항목(8개) : 동·식물상, 수질(지하·지표), 토지이용, 소음·진동, 위락·경관, 지형·지질, 대기질, 친환경적자원순환
- 현황조사항목 및 제외항목 : 평가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주변지역 여건, 주요 보호대상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분·선정

○ 평가범위·방법 등

- 자연생태환경 분야(동·식물상), 수환경 분야(수질), 토지환경 분야(토지이용, 지형·지질), 대기질, 생활환경 분야(소음·진동, 경관), 악취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고, 항목별로 입지에 따른 현황, 사업계획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계획 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함
-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경관 분석 실시
- 사업의 성격, 주변 여건 및 사업 시행에 따른 누적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항목·범위·방법을 선정하여야 함
- 동·식물상은 별도 용역 실시여부, 참여자 정보(명단, 전공분야, 학위), 현장조사표 등 조사 정보(시기, 방법, 위치, 횟수 및 이동경로 등)를 제시하고, 사진, 그림 및 도면 등을 활용하여 가독성과 식별성을 확보하여야 함

- 3 -

○ 각 계획부지별로 구체적인 설정·변경 사유 및 현황 자료(도면) 제시

- 특히 용도지역 상향지역(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) 중 면적이 1,000㎡ 이상인 지역, 자연취락지구 확장 구역, 도로의 신설·확장 또는 연장구역, 그리고 도로 외 모든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 구역 등에 대하여 블록별 자료 작성

○ 하천과 인접한 지역은 수계 현황도를 추가로 작성

- 수계 현황도에는 하천개황도(등고선 제외),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장, 하천의 구분(소하천, 지방하천, 국가하천), 하천/호소 수질등급, 계획홍수위선, 물 흐름 방향, 소 유역 내 유선, 저수지(이용현황 및 규모 등) 등을 개략적인 이격거리와 함께 표시
- 계획지구와 하천/호소와의 거리는 명확히 표시
- 계획지구 하류의 침수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계획지구의 오수처리 및 용수공급 현황을 파악

○ 계획부지를 포함한 전체 지역의 자연환경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제시

- 주능선(생태)축 및 소능선(생태)축이 표시된 도시 개황도면(각 계획부지 경계 및 번호 표시) 도면
- 법정보호종 서식·확인 지점(points)과 그 종명이 표기된 도시 개황도면

**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**

○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·공람(공람기간 20일 이상)하여야 함

- 공람기간 선정 시 공·휴일은 제외하고, 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충분히 홍보
-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
- 추가 홍보(안) : 현수막 부착, 마을이장을 통한 홍보, 마을방송 등

- 4 -

6. 기타

○ 동 사업의 협의근거, 계획부지가 포함된 환경영향평가(전략 및 소규모 포함)의 추진경위, 승인기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

○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, 직책, 성명을 평가서에 제시하여야 함(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5항)

○ 동 심의결과를 반영·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 사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·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

○ 각종 도면, 사진 등은 육안판독이 용이하도록 세채 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시하고, 범례를 명시하여야 함

○ 우리 청은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저가발주로 인한 평가서 부실 작성을 방지하고자 평가 용역의 저가발주 여부 등을 중점검토하고 있음

- 평가서에 "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"를 첨부하여 제출바람

※「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운영지침(환경부, '12.10월)」 참조

2017. 11.

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 류 영 한 (인)

- 5 -

---

**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**

(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)

| | |
|---|---|
| 사업명 | 예천군 거점지역 군관리계획(호명지구 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 구역) 결정(변경) |
| 위치 |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, 오천리, 산합리 일원 |

심 의 의 견 서

□ 총 괄 의 견

○ 경북도청신도시와 인접하여 예천의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 우려가 큰 지역으로 이를 고려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.

○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는 지양하여 미집행시설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이 없도록 계획 수립이 필요함

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

1.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
○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2. 토지이용 구상안

○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3. 대안

○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

○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※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

○

6. 기 타(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)

○ 공사시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.

2017. 11. .

심의위원 [illegible]

---

**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**

(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)

| | |
|---|---|
| 사업명 | 예천군 거점지역 군관리계획(호명지구 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 구역) 결정(변경) |
| 위치 |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, 오천리, 산합리 일원 |

심 의 의 견 서

□ 총 괄 의 견

○ 주변지역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.

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

1.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
○ 대상지역 설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, 환경영향 요소별 평가지역의 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 결과 제시 필요.

2. 토지이용 구상안

○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3. 대안

○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

○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○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6. 기 타(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)

○ 향후 토지소유자별 단위개발이 예상되는 바,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저감방안의 제시 필요.

2017. 11. .

심의위원 [illegible] (인)

---

2017 11/21 16:34 FAX 8104623 yu 0001/0002

수신! 예천군청 환경녹지과 054) 650- 6348

**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**

(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)

| | |
|---|---|
| 사업명 | 예천군 거점지역 군관리계획(호명지구 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 구역) 결정(변경) |
| 위치 |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, 오천리, 산합리 일원 |

심 의 의 견 서

□ 총 괄 의 견

○ 현재 계획구역의 경계를 고속도(영천자양도)구역 제외한 회랑을 연결짓다보면, 생태계에 보전 및 완충지역의 변수를 충분한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됨.

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

1.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
○ 적절한 지역으로 판단됨.

2. 토지이용 구상안

○ 구역경계에서 생태자연도 등급 지역은 원형보전하는 지역 바운딩한 지역으로 판단됨

3. 대안

○ 구역경계의 변경 대안은 제시하는 지역 바운딩한 지역으로 판단됨

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

○ 적절한 지역으로 판단됨.

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※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

○ 의견없음

6. 기 타(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)

○ 계획된 예정한 구역경계의 원안을 보전하는 지역 바운딩한 지역으로 판단됨.

2017. 11. 21.

심의위원 서 [illegible]

##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

(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)

| 사업명 | 예천군 거점지역 군관리계획(호명지구 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 구역) 결정(변경) |
|---|---|
| 위치 |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, 오천리, 산합리 일원 |

심 의 의 견 서

□ 총 괄 의 견

○ 예천군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.

○ 안동에서 예천으로 이어지는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중요의 고장으로써 예천군을 널리 알리는 역할에 어바지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.

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

1.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
○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2. 토지이용 구상안

○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3. 대안

○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

○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※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

○

6. 기 타(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)

○

2017. 11. .

심의위원 황 의 현 (인)

##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

(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)

| 사업명 | 예천군 거점지역 군관리계획(호명지구 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 구역) 결정(변경) |
|---|---|
| 위치 |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, 오천리, 산합리 일원 |

심 의 의 견 서

□ 총 괄 의 견

○ 예천군 관문지역으로 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개발압력이 미칠 수 있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금회 군관리계획의 필요성이 상당한 지역으로 판단됨.

○ 호명면 소재지 인근으로 취락이 밀집해 분포하는 지역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결정이 필요함.

○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주민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

1.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
○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2. 토지이용 구상안

○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3. 대안

○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

○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※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

○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.

6. 기 타(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)

○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2017. 11. .

심의위원 권 종 황 (인)

##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

(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)

| 사업명 | 예천군 거점지역 군관리계획(호명지구 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 구역) 결정(변경) |
|---|---|
| 위치 |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, 오천리, 산합리 일원 |

심 의 의 견 서

□ 총 괄 의 견

○ 지역주민들이 공정하게 잘 살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.

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

1.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
○

2. 토지이용 구상안

○

3. 대안

○

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

○

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※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

○

6. 기 타(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)

○

2017. 11. .

심의위원 김 종 국 (인)